

#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4년 7월 3일 조례 제218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오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오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오산도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오산도시공사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및 오산도시공사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②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시장)** ① 시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시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시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의2(인사청문 실시)** ① 시장은 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상임이사는 시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③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공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과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운영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교부·관리·운영
  4. 컴퓨터공원 관리·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7. 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관리·운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그 밖에 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를 따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오산시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장 감 독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평정하고 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오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경영개선 조치)**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사업에 대해 5년마다 공사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 등기일로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9조,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제5조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개정한다.